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63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강명구 · 박정훈 · 김형동
김기현 · 김용태 · 윤한홍
성일종 · 나경원 · 이성권
김정재 · 엄태영 · 구자근
김미애 · 김재섭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되는 행위는 토지의 소유주 등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에도 해당 내용을 별도의 개별적 고지 행위 없이 고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등기우편을 통해 알리도록 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등기우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⑤ (생 락) <u><신 설></u>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1</u> <u>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u> <u>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가축</u> <u>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u> <u>제하는 경우 해당 제한구역의</u> <u>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가축사</u> <u>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u> <u>해제에 관한 사항을 등기우편</u> <u>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u> <u>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u>